

학교법인 이화학당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

2014. 10. 27. 제정

2015. 5. 26. 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이화학당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 및 법인이 설치·경영하는 각 학교 및 그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종류 및 기능)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1. 교육위원회 : 교육 정책의 수립, 신규 임용 교원의 채용계획, 학생 정원의 증감, 학과·대학·대학원 설치·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심의
2. 재정위원회 : 예산 및 결산, 수의사업과 자금의 운영, 자산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심의
3. 건축위원회 : 건축에 관한 사항 심의
4. 의료위원회 : 의료원의 경영 및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
5. 기타 : 주요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이사장의 요청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(개정 2015.5.26.)

제3조 (구성) ①각 위원회의 위원은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, 해당 학교장, 해당 부속기관의 장, 전문가 등 이사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.

②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선임한다.

제4조 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소집하며,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위원장은 경우에 따라 부위원장에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③각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.

제5조 (회의록)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종료 후 이사장에게 제출한다.

제6조 (실무추진위원회) ①각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실무추진위원회는 7인 이상 14인 이하로 구성하고,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③실무추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 (운영세칙)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.

부칙(2014.10.27. 제정)

이 규정은 2014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 5. 26. 개정)

이 규정은 201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.